

등에 관한 규칙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정·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6. 2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포함될 성능등급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법」 제21조의2,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③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충향충격을 차단성능		
화강질 급배수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건물부분	
	공동부분	
내구성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 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연적율	
	자연지반 녹지율	
	연계된 녹지축 조성	
	비옴 조성	
생태적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세대내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사용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자연통풍 확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역제 대책의 타당성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 이용	
에너지절약	중수도 설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에너지성능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저류·차단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보행자 도로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 여부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역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도시 중심 및 지역 중심과 단지 중심 간의 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동부분	
홀네트워크	홀네트워크 통합시스템	
온열환경	과 실험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원	
	체계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저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직인